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1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전진숙・이수진・허종식

김정호 • 이인영 • 정을호

김남희 • 권칠승 • 이개호

윤후덕 · 임호선 · 박희승

김 윤 · 김선민 · 강선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, 범죄, 식품·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,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, 정신건강 관리, 안전관리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.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·상시적 정책이 필요함.

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·분석· 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(안 제4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 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(안 제7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지역아 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·운영함(안 제10조).
- 마. 시·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 아동사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·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·운영함(안 제11조).

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아동사망의 조사·검토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아동"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 - 2. "아동사망"이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 예방 및 사망한 아동의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

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.
 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· 평가
 - 2.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- 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 - 4. 재원조달방안
 - 5. 그 밖에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④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아동사망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 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아동사망조사위원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.
 - ④ 위원은 아동사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4. 그 밖에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제9조(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)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발생 및

대응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10조(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(이하 "중앙조사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중앙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제11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지원
 - 2.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 · 분석 및 제공
 - 3. 아동사망 조사·검토 방법 및 절차 연구·개발
 - 4. 제11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
 - 5.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
 - 6. 아동사망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
 - 7. 정보시스템 운영 · 관리
 - 8. 그 밖에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조사기관의 업무를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중앙조사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(이하 "지역조사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접하는 시·도의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조사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관할지역 아동사망 현황 파악
 - 2. 아동사망 원인 조사 · 분류
 - 3.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ㆍ검토
 - 4. 사망한 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
 - 5. 정보시스템 입력 · 운영
 - ② 지역조사기관에는 아동사망에 관하여 조사하는 전문조사요원과 사망한 아동의 가족을 상담하는 상담원을 둔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지역조사기관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지역조사기관의 설치·운영, 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요원과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협조요청)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아동사망 관련 관계 전문가,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보고서 작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사망의 현황 및 예방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역별 · 원인별 아동사망 현황 통계
 - 2.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 · 검토 내용
 - 3.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사항
 - 4.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
 - ③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·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아동사망 조사·검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16조(벌칙)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

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